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

2023. 7. 21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1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3년 7월 14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민영완)

가. 제안이유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·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(안 제2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- 가. (필요성) 이 조례의 개정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충북수산물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의 개최·운영·시상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- 나. (타당성)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입법목적과 그 취지가 타당하며, 조례의 개정은 원활한 수산식품 산업 관련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 촉진과 충북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의미가 있음
- 다. (법적합성) 관계 법령 위배 또는 저촉 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라.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이 이견은 없으나 행사의 운영적 측면에서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사·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부실한 콘텐츠와 바가지 상술 등으로 행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사 프로그램 기획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에서 개최·운영할 수 있다.

1.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
2. 수산식품의 소비 및 창업 촉진,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식회, 요리대회, 공모전 및 경진대회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공모전, 경진대회 등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,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 사 개최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 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에서 개최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</u> <u>2. 수산식품의 소비 및 창업 촉진, 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식회, 요 리대회, 공모전 및 경진대회</u> <u>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 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</u> <p>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·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 진 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 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도지사는 공모전, 경진대회 등 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,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0조(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 촉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
2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, 시식회,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
3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
4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5. 그 밖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운영 및 행사 입상자에 대한 시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세 출 : 행사비 지출 및 행사 입상자 시상금 지급

3. 관련조문

- 안 제26조의2(수산식품산업 활성화 행사 개최) 행사 개최 및 입상자에 대한 시상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, 추계는 2023~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- 민물고기 요리강연 행사비 지출(기 추진 사업)
 - 행사 운영비(홍보비 및 진행비) 및 요리 재료비 지출
- 행사 입상자 시상금 지급(신규 추진 사업)
 - 행사 연 1회 개최 및 입상자 4명(또는 4개팀)에 대한 시상금 지급 가정
 - ※ 산출근거 : 2019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물고기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지급

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
 - 행사 운영비(홍보비 및 진행비) 32,000천원, 요리 재료비 3,000천원
 - 행사 시상금 입상자 4명 1,500천원(최우수상 1명 * 500천원, 우수상 1명 * 400천원, 장려상 2명 * 300천원) * 1회
 - 산출결과 : 36,500천원/연,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82,500천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요리강연행사		35,000	35,000	35,000	35,000	35,000	175,000
입상자 시상	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재원 조달	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자체	소 계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수입	지방세	36,500	36,500	36,500	36,500	36,500	182,500

6.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박천일